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58

발의연월일: 2021. 7. 1.

발 의 자:정춘숙·권칠승·김성주

김영진 · 김윤덕 · 김정호

남인순 • 박홍근 • 윤후덕

이정문 · 허종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의 경우에는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 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마약과 동일하게 기재항목의 기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기재항목의 기입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 4조제8호 및 제11호의2).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8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을 취급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	8
제2항, <u>제32조제1항</u> , 제33조	<u>제32조제1항 및 제2</u>
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	<u>ŏ</u> }
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1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
	<u>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u>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 20. (생 략)	12. ~ 20. (현행과 같음)